

建築設計 審議

金 眞 一

※ 本稿는 創立 13周年 紀念 學術討論 主題論文임

1. 基準은 目標가 아니라 最低線이다

우리가 職務上 다루는 하나의 建築이 實像으로 形成되어가는 과정에는 어떤 尺度에 의한 基準이 있다. 그것이 동일 규모에 같은 機能의 建築에서 조차 지역이나 建築主에 따라 그 基準은 다를 수 있다.

이 基準이라는 것은 法の 풀이 같은 것이고 어느 경우에서나 그렇게하면 된다, 또는 그것을 지키면 許容된다라는 最低線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大學에서 60點이 落第를 면하는 金제점인것이지 그 점수가 바람직한 점수가 아닌것과 같다. 따라서 基準의 뜻을 되새기면 그 映像과 實像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類이건 創作世界에서는 基準이니 심의 따위는 어느모로 봐도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本人에게 주어진 主題『建築設計審議』는 어찌보면 創作의 방해자, 同業間의 교란자와 같은 役이 될까 두려워 적지아니 망설였으나 代打者가, 아니 打者가 없어 대타자로 등장하는 것이니 理解하시기 바란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두 本人의 의견이며 서울시 建築審議委나 建設部の 中央設計審議委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 創作과 審議의 갈등

名分이나 이유는 여하튼 作品과 審議가 양립되고 있는 현실의 갈등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考察하여 이 냉혹한 사실에서 調和點을 모색하는데 主題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분은 當局의 심의행위를 다소의 抵抗과 違和感을 가지면서도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높은 知性和 理性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견해에 따라, 必要惡일수도 있는 審議行爲의 正当性을 本人이 찾아서 展

開시켜야 이야기가 될것같다.

審議는 왜 해야하며, 꼭 必要한 것인가하는 愚問인지 賢問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어느 잡지에서 본 前 건축가협회장 崔昌奎씨의 글의 일부를 여기에 인용하여 우리들 建築家가 처해있는 주변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과거 우리들은 건축가라는 專門家로서, 建築이라는 교향악의 指揮者임을 자처해 왔다. 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의 성과는 동원된 樂士들과 악기들의 능력에도 있겠으나 지휘자의 능력이 決定的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떤 경우는 지휘자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악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새로운 樂器들이란 Town planning, Land 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 Social Ecology, Human Psychology등의 악기들인데, 지휘자인 건축가가 이 새로운 악기들의 性能이나 音律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建築을 計劃할 수 있겠는가.

3. 計劃은 容器性的의 設定

計劃을 한다 라는 作業에는 그 計劃의 개념을 유도하는 일이 先行된다. 따라서 計劃이 하나의 技法으로서 독립하여 대상의 복합성에 따라 高度의 정보와 기술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어느면에서는 建築이 예술과 담을 쌓고 技術化 되었다고 개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건축계획의 科學的인 근이 보편화 됨에 따라 建築이 人間환경의 本質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고 기우를 가지는 층도 있다.

그러나 建築計劃이란 현태가 필요로 하는 容器性的의 設定인 것이다. 이 자체는 人間이 무엇인가 만들려는 行爲속에서 보편적으로 불수있는 과정과 같은것이다. 이때

그 대상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과정은 分業化 되어 計劃의 중요성이 강조 되므로 容器性에는 3 가지가 동시에 규정 되어야 한다.

첫째 : 機能의 측면에서의 規定

둘째 : 機能의 時間變化와 적응에 대한 規定

셋째 : 生産技術과 環境에서의 規定

이것들이 서로 관련되고 영키면서 現代建築의 容器性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製圖板上의 작업보다 兪想주변 사정을 밝히고 體系를 주는 倣속한 手法는 없고 各人各색이다. 이렇게 어떤 部分과 部分의 영킴은 創造의 神秘로운 배 일 뒤에 가려지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의 論理的인 귀결이라고도 한다.

이 과정(計劃이나 設計)이 개인 이거나 Group이던 社會共益이면서 都市進化的 軸에도 타당한가 하는 새 問題點을 남긴다.

4. 審議와 社會公益

設計圖書의 심의는 序頭에서 말한 基準의 언저리를 맴도는 일이지만 그 어휘에 作家의 저항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교향악에 새로 등장하는 樂器와 그 音律 조절의 필요성이 建築主와 건축가에게 있듯이 社會公益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루어야겠다는 論理도 肯定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룬 審議내용은 社會公益 이전에 建築主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新舊樂器의 音律調節에는 아직 능숙치 못함을 뜻한다.

여러분에게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한 새 樂器의 사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ow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은 이미 審委에서 검토 하지만 數年內에 Social Ecology, Human Psychology도 따져보게 될 것이다. 지금 大學構座에서 前者의 악기는 서서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불원간 정식 강좌로 등장할 것이다.

審議에는 公務員이 행하는 適法與否의 확인과, 공무원이 法으로 가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적법이지만 건물의 立地條件에서 調整이 필요할때가 있다.

이 이외로 시공단계에 그 建物の 건립으로 인하여 住居環境을 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민의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완전히 적법일지라도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事例를 우리는 住宅街의 教會新築에서나, 고층건물로 인한 Privacy, 日照, 電波妨害등의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규제는 建築 創作活動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이른바 公的인 규제와, 住民측의 環境保全을 위해 규제를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后者에는 전혀 예측이 어려워 건축인들을 더욱 난처하게 한다. 이렇게 法律이나

條例에 의한 규제나 이들 合法性의 건축에 마저, 住民들로 부터의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社會의 背景을 前記한 崔 회장의 글에서 우리도 感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발생할만한 問題點의 關係法이나 條例를 사전에 改正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겠으나 그 結果는 독선적인 방법이 되기 쉽고, 현재의 建築行政機構로서는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혹자는 어느나라에선 우리와 같은 심의 따위의 번거로운 節次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美國에서의 Zoning, 英國의 Planning Permission, 그리고 독일에서의 Detail Plan이라는 것 등으로 방법과 양상은 다르나, 일종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本人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規定등은 日本것을 다분히 본받았으나 그 일본식은 위의 西歐式의 복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5. 美國의 Protective Covenants

美國의 주택지 개발은 엄격한 宅地分割規制(Subdivision Control) 하에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Stage를 규제할 뿐이지 주택지의 環境保全에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상세한 Zoning도 개개 주택지의 特性保全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開發規約이나 Restrict Covenants(制限規制)는 developer로부터 宅地·建物 구입자에 물건을 인도되는 단계에서 쌍방의 契約으로 맺어지고, 居住후의 Stage에 대한 環境保全을 약속하는 制度이다. (Covenants는 建築行為의 규제를 중심으로한 Hard한 규약이지만 共有地나 Pool등의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Homes Association이 조직되어 그 규약에 따라 Soft한 면의 관리가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규제의 표준(Model form)은 FHA에서 주택지의 형벌로 여러종류가 나와 있다. developer와 구입자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規制는 土地台帳(Plat)과 함께 등록되어, 그에 의해 규약위반의 금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규제력이 생긴다. 이를테면 美國版 建築協定인 것이다. 일반적인 규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の内容으로서 주택이외의 건축을 금지하는 土地利用규제, 住宅의 型, Design, Fance등의 규제, 건축선 규제, 最少限宅地(면적, 폭, 깊이)規定, 생활상의 不適當行為와 廣告行為의 규제, 최저 건축비를 정하여 건축의 질적보전이다. 그 유효기간은 25~45年이고 자동 연장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들 규약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居住者에 의한 建築規制委員會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6. 審議는 基準의 주변을 맴돈다

(審議와 調整의 例)

連立住宅이란 자기 뜰을 가지고 1·2層을 1住居로 단위

짓는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후반부터 建築審議에 서서히 나타난 連立住宅의 設計圖에 의하면 준공검사만 필하면 1·2層에는 자기 독립된 世帯가 들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下層居室 한쪽의 階段 처리에는 무리가 생기고, 2층 주방이 될수 있는 位置에 房이 어색하게 되었다. 1·2층에 각기 다른 세대가 입주해야겠다는 우리 실정을 外面할 길이 없어서 審議委에서 이를 陽性化시키기 시작한 것이 금 3月 下旬인 가 기억된다. 이를 합법화시키고 적용시키기 위해 平面에서의 조정은 계단실型Apt의 계단실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上下層의 出入이 완전 분리되었다. 그후 건축자재 파동으로 일반건축이 대폭 억제되어 아직 解除 되지 않았는데 5月경 부터 이 제약에서 벗어난 連립주택의 審議申請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런데 그 平面에는 심의위가 권장한 계단처리(계단실型)방법이 보편화 되어 設計에 약 80% 반영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렸다.

그 결과는 連立住宅이란 1·2층에 각기 다른 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지금은 95% 정도가 이런 平面으로 되어 있다. 이에 당황한 위원회에서는 제동을 가할 필요를 느껴 連립주택의 원 개념으로 서서히 유도해야겠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같은 審議에서의 調整結果는 입주 후 2층 욕실이나 주방에서의 漏水의 관리문제등이 없지 않으나, 법이나 條例의 개정이 없이 설계상의 모순점을 조절한 예가 되었다.

옛말에, 아는 것과 行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여기서의 行에는 專門性的의 요구가 있다. 심의과정에서 번번히 문제시되는 設計는, 그저 안다고 하는 次元에서 다른 設計인 것이다.

事例를 보자. 住居浴室의 욕조, 변기, 세면기 등의 배치에서 配管이 一字, ㄱ字, ㄷ字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또, 욕실 출입문의 폭이나, 안으로 열 것인가, 밖으로 열 것인가 등 基本的인 문제를 아는 次元에서 다루었지, 行하는 차원에 미치지 못한 設計가 어림잡아 심의건수의 약 20%는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하던 심의라는 것은 참으로 妙한것으로서, 위의 예와 같은 경우는 修正의 要求가 따르겠으나, 水準 이상의 설계라하여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규상 흠될 것은 특히 없으나, 어느 部分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겠다 라는 意見(권장사항)이 첨부되어 나가는데 이때 그 의견을 作家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느냐에 問題가 있다.

심의위의 이런 류의 의견은 묵살하여도 無妨하나, 당신의 수준이라면, 그 점을 再考하면 더 좋은 案이 나올 것

이라는 Hint로 담담히 받아들이면 분명히 더 좋아지고, 또 심의위의 존립의의도 더 높아지는 셈이 된다.

이러한 심의위의 의견은 大家, 老作家에게도 서슴없이 던져지는데 그 분들은 거의 아무소리 없이 순수하게 받아 個性을 반영시켜 심의위의 존경을 받는다.

한편, 建築家の 의도보다 建築主의 강력하고 무리한 요구가 반영된 作品도 審議委의 설득으로 注文者를 간접적으로 납득시키거나 이해시켜 作品의 特色을 높일수 있다는 예는 통쾌한 일에 속한다.

再審이다, 조건부다, 권장사항이다 하여 서로 민망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建築主에 대한 建築家の 입장이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를 도와준다. 또 하나의 예는, 심의 과정에서 아무 군소리 없이 통과되는 수가 많다. 그러면 그 設計가 좋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소위 基準에 역지로 맞춘 것이니 그런 作品(?)에 條件을 붙여야 소화될상 싶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그냥 넘긴다. 이런 設計를 模範答案紙라고 한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을 면한 60점인 것이다. 이 때 손해보는 측은 물론 建築主가 된다.

이런 건축가들의 변명에는 분주하여 圖面Check가 불신했다고 한다. 옳은 말씀일 것이다. 그러면 補助士가 設計했다는 풀이가 되는데, 이야기가 좀 빗나가지만 雄志를 지니고 大學을 나온 者에게 보조사라는 호칭이 어느 직장, 어느 직종에 또 있는지 알 수 없다. 남은 大學을 나오면 國家의 干城이요, 산업의 기수라고 추켜세우는데, 補助士란 무슨 잡꼬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세상 돌아가는걸 좀 直視하자. 이것은 다분히 徒第時代의 유물인데 이점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本論에 다시 돌아가자. 내 이름 석자를 써놓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否定은 오늘 新聞에 보도된 偽造古書畫에는 통할 수 있다. 원래, 위대한 作家는 더 위대해 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偽造品일지라도 내 것 보다 더 잘 그려진 것이라면 서슴치 않고 내 것이라 해도 위조한 자가 표면에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니 그만이다. 또 그것이 내가 그린 眞品일지라도 그림이 시원치 못하면 일언지하에 이젠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하면 그만인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建築作品은 書畫에서와 같은 편리한 점이 없다.

작품이라 자처하는 設計圖가 어떤 법이나 基準에 의해 척척 가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創作品이 아니고 工產品인 것이다. 때문에 법에 의한 기준이라는 어떤 尺度の 언저리에서 이리재고, 저리 따져보는 設計審議라는 것이 있음직 하지 않는가.

7. 審議를 調整으로 보자

국가의 發展에는 유명 무명의 建築人들의 기여를 잊을 수 없으나 功을 받거나 하는 建築人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순박하다. 그만큼 建築에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다. 創作과 審議라는 이율 배반적인 현실도 建築은 都市環境의 요소이며, 경제적 산물이라는 부산물이다. 때문에 建築을 순수 藝術로 받아들여던 한가로운 時代가 못되니 復合社會의 安全裝置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建築審委에서 보는 설계도의 質的向上은 季節이 바뀌는 속도만큼 빠르다는 일은 여러분이 부단한 努力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누구는 더 알고 잘 나서 높은자리에서 내려다 보는 심의 자세나, 심의 風土는 이미 있을수도 없고, 그런 것을

믿을 사람도 없다. 다만 주어진 직무상 機能의 分割로 새겨보면 된다.

作品은 情感에 기대되는 바 크지만 건축이 知性으로, 도시환경적인 면에서 이를 다루지 못하면 建築設計 審議는 아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서울市에서나 建設部에서 행하는 설계도심의 기본정신은 指導에 의한 조정이라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 이유는 어떤 새로운 문제점에 합당하는 法律이나 條例도 그것이 제정되어 効力을 발생하기 까지에는 긴 시일을 요하는데, 그간에도 建築活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생각 한다면 作品에 대한 侵害라는 Hard한 것이, Soft한 調整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漢陽工大 教授)